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

2020. 3. 재판제도분과위원회

I. 분과위원회 토의 결과 요약

▣ **현행 제도에서의 영상재판 활성화 방안**

- 필요한 상황에서 영상재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정보 공유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함과 아울러, 장비 확충 및 프로그램 편의성 증진을 통해 사전준비를 위한 재판부 및 당사자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여야 함
-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재판부의 적극적인 활용 의지가 중요함

▣ **영상재판 허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통한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민사사건 변론기일에 대하여도 영상재판을 도입하되,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단계적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함이 적절함
- 민사사건 변론준비기일은 쟁점과 증거의 정리, 그 밖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한 준비라는 절차의 특성에 맞춰 허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법관 대면권의 의의, 전자소송 미도입 상황에 비추어 형사사건에서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데 신중하여야 하나, 피의자·피고인의 호송이나 증인 소환이 곤란한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한 영상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

Ⅱ. 분과위원회 진행 개요

가. 회의 경과

▣ **제9차 회의: 2020. 11. 9. 14:40~17:00**

▣ **제10차 회의(화상회의): 2020. 12. 14. 15:00~17:00**

▣ **제11차 회의(화상회의): 2021. 1. 18. 15:00~17:00**

▣ **제12차 회의(이메일회의): 2021. 2. 10. ~ 17.**

나. 토의 방식

▣ **구체적인 검토 사항의 확인 및 각 사항에 대한 논의**

- 영상재판의 확대 여부 및 확대 범위
- 현행 법률 하에서 가능하고 적합한 영상재판의 범위와 실행방안
-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영상재판 활용방안
- 법률 개정을 통한 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

▣ **영상재판 관련 설문조사의 계획 및 실행**

- 설문조사 항목에 대한 토론

▣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발제 및 분석**

다. 영상재판 관련 설문조사[1)]

1) 전국 법관 및 법원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 **기간: 2020. 12. 28. ~ 2021. 1. 8.**

▣ **총 설문대상자 수: 18,494명**

▣ **총 설문 응답자 수: 1,575명(법관: 452명, 법원공무원 1,119명, 무응답: 4명)**

1) 이하 언급하는 '설문조사'는 해당 설문조사를 가리킴

- 응답률: 8.51%
- 설문 응답자 구성

구분	명수	백분율(%)
① 법관(합의부 재판장)	139	8.8
② 법관(단독 재판장)	171	10.9
③ 법관(합의부원, 기타)	142	9.0
④ 법원공무원(참여관)	545	34.6
⑤ 법원공무원(실무관)	348	22.1
⑥ 법원공무원(기타)	226	14.3
무응답	4	0.3
합계	1,57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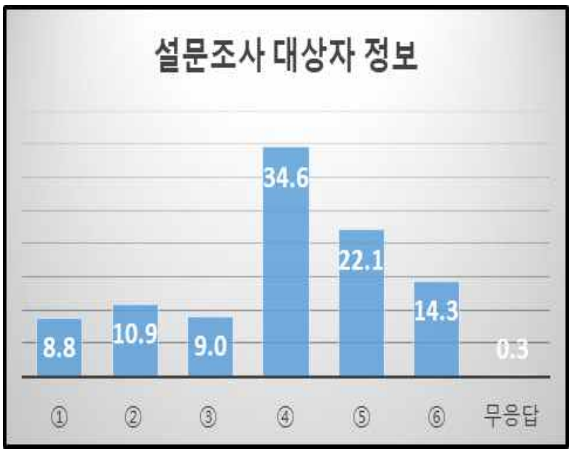

2) 전국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 **기간: 2020. 12. 28. ~ 2021. 1. 8.**

▣ **총 설문 대상자 수: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22,518명**

▣ **총 설문 응답자 수: 1,144명**

- 응답률: 5.08%
- 설문 응답자 구성

구분	명수	백분율(%)
① 개인변호사	448	39.2
②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589	51.5
③ 사기업 사내 변호사	55	4.8
④ 공공기관 소속 변호사	32	2.8
⑤ 기타	20	1.7
무응답	0	0.0
합계	1,14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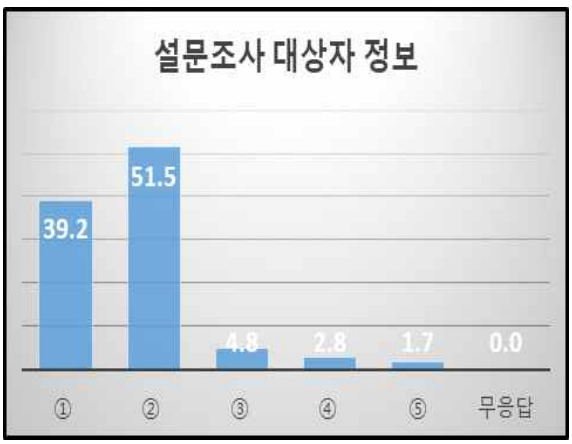

Ⅲ. 토의 배경지식

1. 비교법적 검토

가. 미국

1) 코로나19 이전

▣ **민사사건 원격영상재판**

-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43조 제(a)항에서 영상재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어 증인신문절차에서 비교적 활발히 이용됨
  - "연방 법령, 연방증거규칙, 민사소송규칙, 대법원에 의해 채택된 다른 규칙이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증인의 증언은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절박한 상황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적절한 보호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다른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개된 법정에서의 증언을 허가할 수 있다."

▣ **형사사건 원격영상재판**

- 수정헌법 제6조 '피고인의 증인 대면권' 침해 문제로 연방형사소송규칙에서는 명문의 영상재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음

2) 코로나19 이후

▣ **형사사건에 대한 영상재판 근거규정 신설**

- 2020. 3. 27. 시행된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 중 Section 15002
  - 미국 경기부양 법안 중 1개 조항(제15002조)에서 '특정상황에서 **영상 또는 전화 통화 방식에 의한 형사재판**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함
- CARES Act Section 15002. 후속조치

- 2020. 3. 29. 미국 연방사법회의는 국가비상사태로 연방법원의 재판기능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각급 법원장들이 형사절차에서 영상재판 이용을 승인하는 명령을 함

나. 영국

1) 코로나19 이전

- 민사사건에서 비용절감, 신속처리 등을 기준으로 영상재판을 도입함
- 형사사건에서 영국 외 거주 증인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영상재판을 도입함
- 영상신문 허용 기준, 요건을 법령에 상세하게 규정하기보다는 판사가 재량에 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2) 코로나19 이후

▣ **2020. 3. 25. Coronavirus Act 2020 제정·시행**

- 장관의 재량에 따라 6개월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는 2년 한시법이고, 6개월마다 의회의 갱신(renewal)을 받아야 함
- 위 법률 제53조 내지 제57조에서 '법정에서 영상·음성기술의 사용'(Courts and tribunals: use of video and audio technology) 조항을 두어 배심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형사재판에서 영상·음성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함

▣ **2020. 3. 26. 민사사건 원격재판을 위한 표준지침 마련**

- 「CIVIL JUSTICE IN ENGLAND and WALES PROTOCOL REGARDING REMOTE HEARINGS」

다. 독일

▣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매우 폭넓은 영상재판 규정을 마련**

- 2002년 민사소송법(ZPO) 개정으로 민사사건에서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감정인·당사자신문 등 변론 전체에 대하여 영상재판 허용 → 2013년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쌍방 당사자 동의 요건 삭제 등 영상재판 요건을 대폭 완화함

- 당사자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영상재판이 가능하고, 법원이 비교형량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영상재판 진행을 결정함

● 행정법원법(VwGO), 사회법원법(SGG) 등에서 민사소송법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어 행정사건에서도 민사사건과 동일하게 영상재판 진행이 가능함

● 형사사건의 경우 경미사건과 증인신문 등 특정 절차에서만 영상재판이 가능함

- 영상재판이 가능한 경우를 개별적으로 규정

▣ **코로나19 이후 영상재판 관련 특별한 법률 개정은 없었음**

라. 호주

▣ **코로나19 이전**

● 1970년대 영상재판을 도입한 이후 민사·형사사건의 증인, 감정인 신문 등에서 영상재판을 비교적 빈번하게 시행함

▣ **코로나19 이후**

● 코로나 사태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법정 구두변론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영상재판에 참여하는 소송대리인을 위한 규정(PROTOCOL)을 발표함

마. 일본

▣ **민사사건 영상재판**

● 1996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상 등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의 방법에 의한 심문' 규정을 신설하여, "법원은 원격지에 거주하는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최고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격지자가 영상과 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상대방의 상태를 상호 인식하면서 통화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심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당사자본인신문과 감정인신문에 준용하고 있음

- 증인신문을 영상시스템의 의하여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함

▣ **형사사건 영상재판**

- 200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증인신문제도가 도입되었음
- "재판소는 ① 형법상 성폭력피해자와 ② 특별법상 아동학대·아동성폭력피해자 및 ③ 그 외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재판관 및 소송관계인이 증인을 신문하기 위하여 재석하는 장소에서 진술할 경우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정신의 평온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재판관 및 소송관계인이 증인을 신문하기 위하여 재석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이들이 재석하는 장소와 동일한 구내에 한함)에 그 증인을 재석시켜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상대의 상태를 서로 인식하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신문할 수 있음

2. 영상재판 관련 논의 및 법령 제·개정 경과

가. 1995. 12. 6.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시행

▣ **관련 법령**

◎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2010. 3. 24. 법률 제1017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원격영상재판"이란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만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건(같은 항 제3호의 사건은 즉결심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의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시법원(市法院) 또는 군법원(郡法院)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법원조직법
제34조(시 · 군법원의 관할)
① 시 · 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2. 화해 · 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3.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규칙(1995. 12. 26. 제정)
제3조 (원격영상재판을 할 법원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원격영상재판**을 하되, 제1호가 규정하는 사건의 원격지 법정(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소재지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재판관계인이 출석할 수 있는 법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의 법정으로 하고, 제2호가 규정하는 사건의 원격지 법정은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의 법정으로 한다.
1. 춘천지방법원 양구군법원 또는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에 계속된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다만, 독촉사건을 제외한다)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계속된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다만, 독촉사건을 제외한다)으로서 당사자 중 1인의 주소지 또는 피고인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울릉군인 사건
(이하 생략)

- 교통이 불편한 도서·산간 벽지의 주민이 원거리에 있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이 1995. 12. 6. 제정·시행됨

- 특례법은 적용 범위에 관하여, ① 시·군법원의 관할 사건 중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사건,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② 원격영상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법정질서유지 명령 위반, 허가 없는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이유로 한 감치사건, ③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군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

로 규정함

- 다만,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규칙에서 경주와 울릉도, 인제·양구와 홍천 사이의 법원에서 소액사건, 즉결심판 등 제한된 범위의 사건에 대하여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도록 대상 법원 및 대상 사건을 한정하여 규정함

▣ **시행 경과**

- 1996. 2.경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인제·양구군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사이에 원격영상재판시스템을 구축·개통함
- 원격영상재판의 전체적인 이용 건수는 1996년 183건, 1997년 251건, 1998년 778건, 1999년 747건, 2000년 400건으로 2000년까지 총 2,359건이 실시되었으나, 2001. 4.경까지 순차 중단됨
- **주된 중단 사유**: 운영비[2] 등 예산 부족
  - 경주지원↔울릉등기소는 1999. 3.경 시스템 운용 중단: 울릉군의 관할이 1998. 11.경 신설 포항지원으로 변경되었으나 비용부담으로 설비 이전을 할 수 없었음
  - 홍천군법원↔인제·양구군법원은 2001. 4.경 시스템 운용 중단: 과도한 운영비 지출, 장비 노후화가 원인임
- 현재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이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사실상 사문화된 법률로 여겨지고 있음
  - 최근 실시되는 영상재판은 모두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의한 것이고,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하고 있지는 않음

나.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적용범위 확대 시도

▣ **2010. 12. 6. 박준선 의원 등 11인의 발의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2) 전용회선 비용으로 1998년 기준 월 약 500만 원 소요

- 원격지 법정 외 그 밖의 장소에서도 영상재판이 가능하게 하여 집, 사무실에서의 접속을 허용하는 내용

▣ **2012. 5. 29. 임기만료 폐기**

- 당시 대법원은 영상재판보다는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을 우선순위로 두고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던 상황이었음

다. 2015. 3.경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영상전송에 의한 증인 등 신문방식 도입' 논의

▣ **증인, 감정인 등에 대한 영상신문 도입 논의**

- 원격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민사재판**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인터넷영상전송시스템을 활용한 **증인 등(일반증인, 감정증인, 감정인) 신문**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함
- 다만, 민사재판의 변론기일, 형사재판에 대하여는 원격재판의 도입을 보류함

라. 2016. 3.경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증인·감정인에 대한 영상신문 도입

▣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2016. 3. 29. 개정으로 신설, 2016. 9. 30. 시행>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3]**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2.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3) 법률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및 '인터넷 화상장치'란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나, 대법원예규인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①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신망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와 함께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시설"로, ② '인터넷 화상장치'를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로 각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정의에 따를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주로 영상재판 참여자가 거주지 근처에 있는 법원 관리 중계시설로 출석**하게 되고, **인터넷 화상장치는 주로 영상재판 참여자가 본인의 사무실, 자택에 있는 장치를 이용**하게 됨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39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2016. 3. 29. 개정으로 신설, 2016. 9. 30. 시행>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감정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40조(감정증인) <2016. 3. 29. 개정, 2016. 9. 30. 시행>

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신문은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제341조(감정의 촉탁) <2016. 3. 29. 개정, 2016. 9. 30. 시행>

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 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 · 학교, 그 밖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규칙

제9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2016. 9. 6. 개정으로 신설, 2016. 9. 30. 시행>

① 법 제327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을 법정 아닌 곳으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 설치된 곳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 안의 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과 법정 밖의 증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법원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 밖의 적당한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03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등) <2016. 9. 6. 개정으로 신설, 2016. 9. 30. 시행>

① 법 제339조의3에 따른 감정인신문은 감정인을 법정 아닌 곳으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가 설치된 곳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

안의 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과 법정 밖의 감정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95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법 제340조 단서에 따른 감정증인신문과 법 제341조제3항에 따른 감정서 설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증인 등에 대한 증거조사절차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문 과정에서 증인 등을 보호·배려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영상신문절차를 도입함
- 증인, 감정인, 감정증인, 감정촉탁의 경우 모두 원격영상신문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마. 2018. 6.경 사법정책연구원 주최 '정보화시대와 영상재판' 심포지엄 개최

▣ **사법정책원구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공동주최**

▣ **논의 주제**

- 제1세션: 영상재판의 실제와 전망
- 제2세션: 정보화 시대와 재판의 변화

▣ **영상재판의 도입과 확대를 긍정적으로 논의함**

바. 2018. 10.경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논의

▣ **'소송절차에서의 사법접근성 강화'의 관점에서 영상재판의 도입 여부 및 범위를 논의함**

▣ **논의 결과**

- 6인의 위원(사법발전위원회는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됨)이 **영상재판 도입 찬성론**을 지지하고, 2인의 위원은 영상재판 도입 신중론을 지지함
  - 영상재판 도입을 찬성한 위원들의 의견: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영상재판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영상재판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를

할 수 있음

-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원일치로 찬성 의결하였음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소송이 정착된 현실에서, 국민들이 법원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재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새로운 재판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송당사자 및 대리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판에 출석하고 변론 등을 할 수 있는 **영상재판이 병행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사. 2020. 6.경 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변론준비기일에 관한 영상재판 근거 마련

▣ 관련 법령

> ◎ 민사소송규칙
>
> 제70조(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
>
> (생략)
>
> ③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와 변론의 준비와 진행 및 변론에 필요한 시간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
> ④ 재판장등은 당사자와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분량, 제출기간 및 양식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는 그 합의에 따라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 ⑤ 재판장등은 기일을 열거나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양 쪽 당사자와 **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동시에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다. <2020. 6. 1. 개정, 시행>
>
> ⑥ 재판장등은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의2를 준용한다. <2020. 6. 1. 개정으로 신설, 시행>

- 종전 민사소송규칙 규정에 의하면 변론준비기일의 법적 효과가 없는 '영상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해석되었으나, 위 규정이 '영상 변론 준비기일'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견해 대립이 있었음

-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상재판의 필요성이 커지던 상황에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음

- **제70조 제5항(협의절차)의 개정**

- 영상 변론준비기일을 도입하면서, 협의절차에 영상회의 방식을 명시함

● 제70조 제6항의 신설

- 영상 변론준비기일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영상재판 활용 현황

가. 각급 법원의 영상재판 실시 사례

▣ **서울고등법원**

●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2020. 3.경 서울고등법원은 민사소송규칙 제70조 등에 근거하여 영상재판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권고함

● 이에 따라 2020. 3.경부터 민사5부, 민사22부, 민사37부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사건(변론준비기일)이 영상재판으로 진행됨

● 2020. 7. 6.자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워크숍에서 "영상재판(Video Conference Hearing)과 전자소송 및 법원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짐

▣ **대구고등법원**

● 코로나19의 피해가 컸던 대구 지역의 대구고등법원(민사 1부, 민사 3부)에서도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 6.경 처음으로 신청사건 심문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심문기일을 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

▣ **서울회생법원**

● 2020. 4.경 기존 회의실 등을 리모델링하여 6개의 영상심문실 설치

● 사건에 따라 법원내부망 또는 외부인터넷망을 사용하여 심문기일 또는 파산선고기일을 진행함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부산지법 서부지원 일부 재판부에서는 법원 전용 프로그램 대신 외부 상용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 협의절차를 진행하기도 함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2019. 10.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처음으로 형사재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원격영상 증인신문 실시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을 연결

● 이후 다른 법원에서도 형사사건 원격영상 증인신문 실시

나. 영상재판 활용 수준

▣ **일부 법원 또는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영상재판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법관, 법원공무원 및 변호사의 영상재판 경험이나 활용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음**

● 설문조사 결과, 법관(74.2%), 법원공무원(80.0%), 변호사(92.9%) 중 다수가 공통적으로 '영상재판을 실시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 **영상재판 미활용 이유에 관한 설문**

영상재판을 실시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현행 법령상 영상재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② 영상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음
③ 영상재판의 활용영역이 매우 제한적이라 실시하기가 어려웠음
④ 의뢰인이 원하지 않음
⑤ 기타

● 응답 결과

- **법관:** 다수 응답(38.3%)은 ② 영상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음

구분	명수	백분율(%)
①	26	7.7
②	130	38.3
③	120	35.4
④	17	5.0
⑤	37	11.0
무응답	9	2.6
합계	3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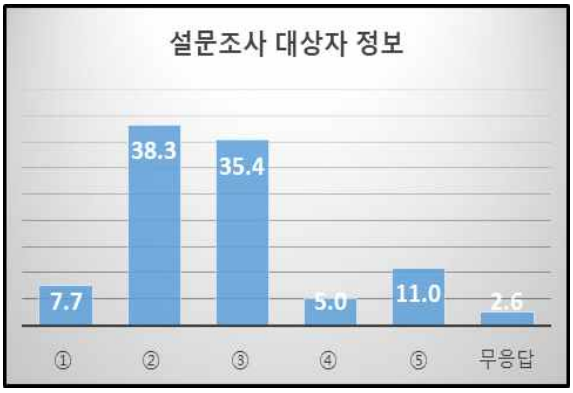

- **변호사:** 다수 응답(39.4%)은 ① 현행 법령상 영상재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구분	명수	백분율(%)
①	421	39.4
②	172	16.1
③	344	32.2
④	21	2.0
⑤	103	9.6
무응답	7	0.7
합계	1,06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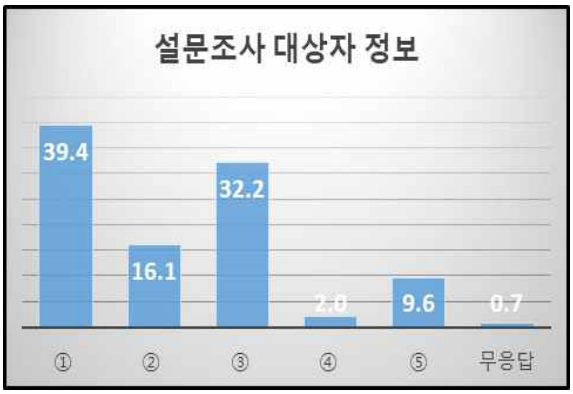

▣ 홍보 필요

● 설문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다수의 변호사가 현재 영상재판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도 응답하고 있어서, 영상재판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민사 사건에서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6항이 신설되어 2020. 6. 1.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① 알고 있었음

② 알지 못하였음

● 변호사

구분	명수	백분율(%)
①	323	28.2
②	821	71.8
무응답	0	0.0
합계	1,14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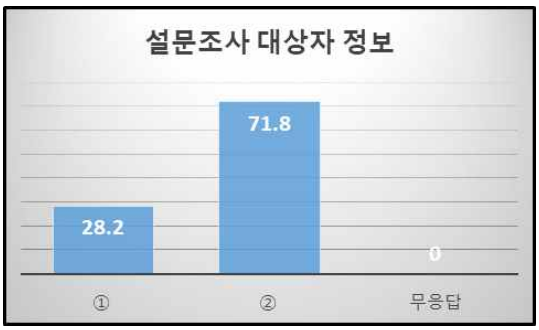

▣ 다만, 향후 영상재판의 활용의사는 높음

● ‘영상재판 활용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응답한 비율은 법관 2.1%, 법원공무원 0.4%, 변호사 4.1%에 불과함

현행 법률상 허용되는 아래의 영상재판 유형 중 귀하께서 활용할 의사가 있거나,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유형을 모두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선택 가능)

① 민사 사건에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변론준비기일
② 민사 사건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감정인 등 신문
③ 민사 사건에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감정인 등 신문
④ 형사 사건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 등 신문
⑤ 영상재판 활용 의사 없음

● 법관

구분	명수	응답비율 (%)	백분율 (%)
①	333	73.6	27.9
②	280	62.0	23.5
③	325	72.0	27.2
④	229	50.7	19.2
⑤	25	5.5	2.1
무응답	1	0.2	0.1
합계	1,193	264.0	100.0

● 법원공무원

구분	명수	응답비율 (%)	백분율 (%)
①	451	40.4	23.8
②	492	44.1	25.9
③	448	40.1	23.6
④	481	43.1	25.4
⑤	8	0.8	0.4
무응답	17	1.5	0.9
합계	1,897	170.0	100.0

● 변호사

구분	명수	응답비율 (%)	백분율 (%)
①	961	84.0	38.3
②	605	52.6	24.1
③	759	66.2	30.2
④	82	7.1	3.3
⑤	104	9.1	4.1
무응답	0	0.0	0.0
합계	2,511	219.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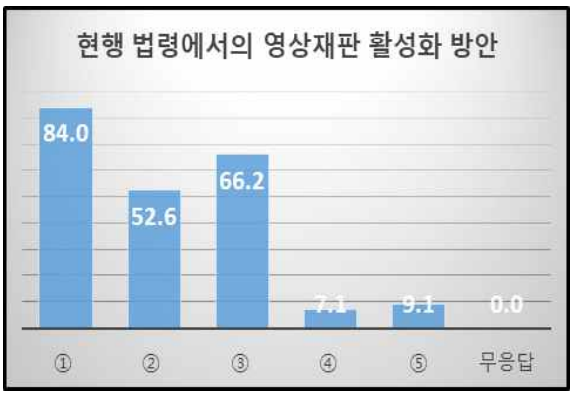

4. 영상재판 확대 검토 시 고려할 사항

▣ 영상재판의 편익 관련

● **접근성**: 재판관계인이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법정이 설치되어 있는 법정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접근성 측면에서 기존 재판보다 이점이 있음

● **신속성**: 해외거주 등으로 법정 출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기존 재판에 비해 신속한 재판 진행이 가능함

● **충실성**: 출석의 어려움 등으로 기존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던 재판관계인이 용이하게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전문가(감정인, 통역인) 등 재판관계인의 재판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음

▣ 공개주의 관련

- ‘공개주의’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형태로 행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재판권 행사의 공정함을 국민에게 보여주어 재판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법원청사 내 법정에서 진행하는 원격영상재판의 경우에는 공개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
  - 방청객은 법정에서 영상재판 진행 상황을 방청할 수 있음
- 다만, 법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대비책을 전제로 인터넷 등으로 일반인 누구나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면 공개주의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을 것임
- 미국에서 공개재판 문제를 실시간 스트리밍, 홈페이지 동영상 게시 등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만함
  - 공개재판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법원행정처(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 Courts)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발표 → ”언론과 일반 국민은 코로나 사태 동안 영상재판으로 진행되는 형사절차에 접근할 수 있다. 다만, 법정촬영 및 방송을 금지한 연방형사소송규칙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영상재판을 부적절하게 녹화하거나 재방송하는 개인은 처벌될 수 있다.“

▣ 직접주의 관련

- 직접주의는 법원이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정확한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기술적으로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청각적·시각적 방법을 통해 심증을 형성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영상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직접주의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음 → 정보통신기술이나 장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반면 법정에서 오감에 의해 직접 얻을 수 있는 다양하고 생생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직접주의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보안 관련

- 영상재판 시 참여자의 신원확인이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본인임을 가장하여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할 위험성이 있음
- 누구든지 영상재판에 인터넷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정보유출, 해킹 등으로 인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해킹이 아니더라도 당사자나 대리인이 변론을 녹화하여 유출할 우려도 있음

▣ 업무부담 및 업무효율성 관련

- 영상재판을 위해서는 재판부의 영상재판 운영 노하우 숙지, 영상재판준비, 재판관계인에 대한 설명 등의 추가 업무부담이 발생
- 당사자가 집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재판을 진행하거나 재판장이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진행하는 경우, 법정에서 진행하는 경우에 비해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만한 여러 요소(예컨대 소음, 접속이나 송수신 불량 등)나 우발적인 사태(예컨대 가족이나 제3자의 개입 등)에 대한 즉시 대응의 어려움 등으로 재판의 원활한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오히려 재판 진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경제성 관련

- 투자비용, 운영비용 및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비용 등 제반 투자비용 대비 활용도가 낮을 경우 경제성 없는 사업이 될 위험성이 있음
- 재판부로서는 추가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영상재판을 이용해야 하는 이점이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상재판 이용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우리나라의 과거 영상재판 경험은 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 부족으로 제반 투자비용 대비 활용도가 낮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Ⅳ. 안건별 검토

1. 현행 법률에서의 영상재판 활성화 방안

1) 현행 법률상 가능한 영상재판의 범위

▣ **민사사건에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변론준비기일**

▣ **민사사건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감정인 등 신문**

▣ **민사사건에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감정인 등 신문**

▣ **형사사건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이용한 증인 등 신문**

● 민사사건 영상재판에 관한 관련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형사사건 영상재판에 관한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음

◎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2007. 6. 1. 신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 · 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5(중계방법 및 증언실의 위치) <2007. 10. 29. 신설>

① 법원은 제84조의4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할 때 증인을 법정 외의 장소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가 설치된 증언실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의 재판장,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증언실의 증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인신문을 한다. 다만, 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는

것이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언실은 법원 내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설문조사 결과

▣ 영상재판 방식

(현행법상 민사사건 변론준비기일, 감정인신문에 적용)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격참여자가 거주지 근처 중계시설로 출석해야 하는 반면, 인터넷 화상장치는 개인 사무실이나 자택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차이가 있는데, 양쪽 모두 활용 가능하다면 어느 쪽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복수선택 가능)

① 법원 직원 등이 관리하여 원격참여자의 신원 확인이 확실하고 보안 문제도 거의 없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

② 원격참여자의 입장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우선적으로 활용

③ 사전에 원격참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결정

④ 원격참여자가 소송대리인이나 감정인인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당사자 본인인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

⑤ 원격참여자가 사무실에서 참여할 의향이라면 인터넷 화상장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자택과 별도로 사무실이 없다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

⑥ 기타(　　)

● 법관

구분	명수	응답비율 (%)	백분율 (%)
①	214	47.2	34.2
②	91	20.0	14.6
③	79	17.4	12.7
④	190	42.0	30.3
⑤	39	8.6	6.2
⑥	6	1.3	0.9
무응답	7	1.5	1.1
합계	626	138.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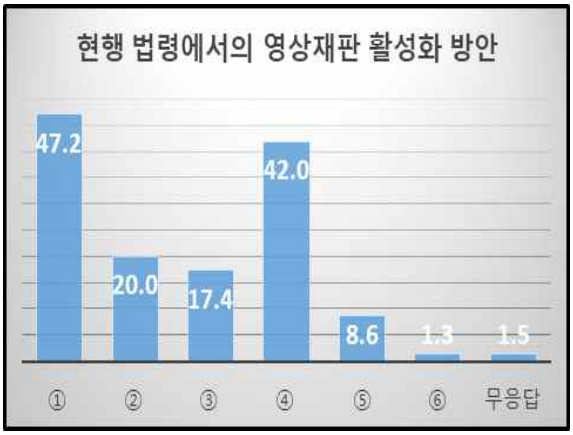

● 법원공무원

구분	명수	응답비율 (%)	백분율 (%)
①	520	46.4	35.9
②	213	19.0	14.8
③	195	17.4	13.5
④	318	28.4	21.9
⑤	128	11.4	8.9
⑥	15	1.3	1.1
무응답	57	5.1	3.9
합계	1,446	129.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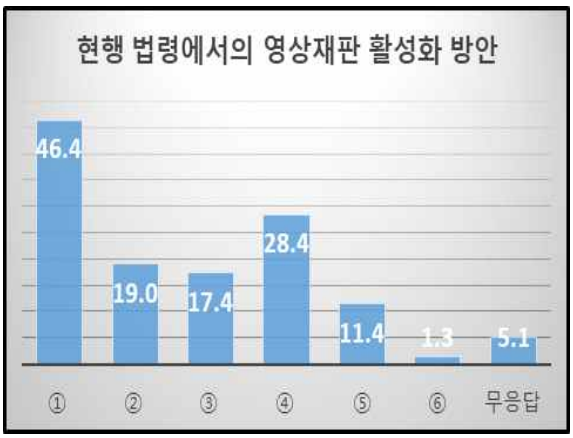

● 변호사

구분	명수	응답비율 (%)	백분율 (%)
①	347	30.2	21.3
②	432	37.8	26.6
③	247	34.6	15.2
④	396	17.4	24.4
⑤	199	0.6	12.2
⑥	5	0.4	0.3
무응답	0	0.0	0.0
합계	1,626	12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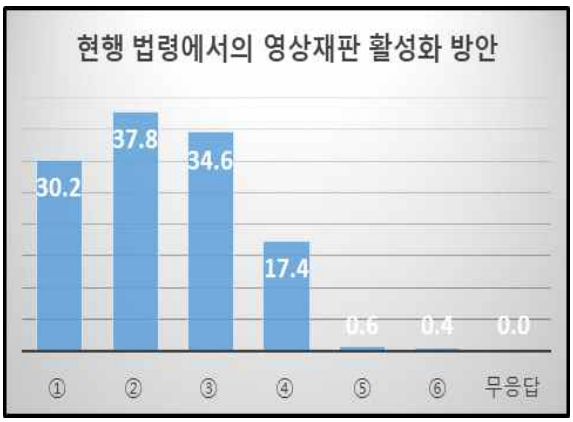

▣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한 조치

현행 제도에서 영상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① 영상재판 프로그램의 편의성 증진과 장비 확충 등 기술적 보완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들 사이의 공감대 형성

③ 재판부의 적극적 활용 자세

④ 소송관계인 및 대리인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소통

⑤ 기타(　　)

● 법관

구분	명수	백분율(%)
①	293	64.8
②	57	12.6
③	60	13.3
④	27	6.0
⑤	9	2.0
무응답	6	1.3
합계	4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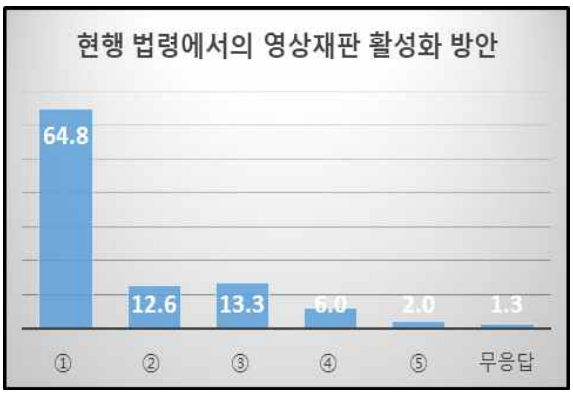

● 법원공무원

구분	명수	백분율(%)
①	682	61.0
②	226	20.2
③	90	8.0
④	37	3.3
⑤	22	2.0
무응답	62	5.5
합계	1,1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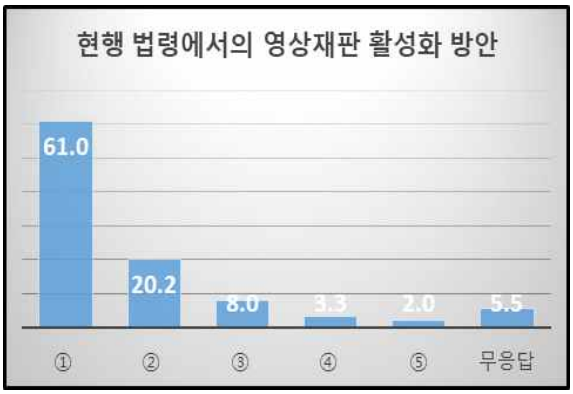

● 변호사

구분	명수	백분율(%)
①	507	44.3
②	192	16.8
③	360	31.5
④	75	6.5
⑤	10	0.9
무응답	0	0.0
합계	1,14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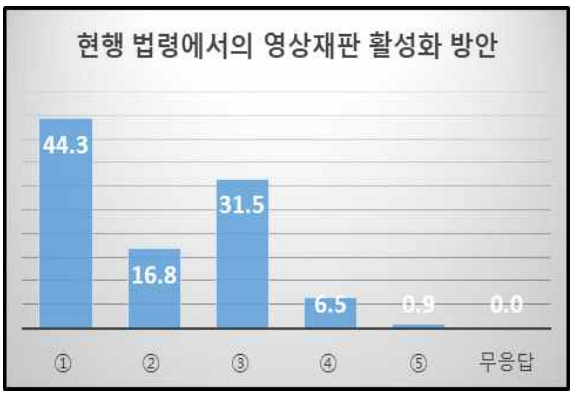

3) 분과위원회 주요 논의내용

▣ 홍보 필요성

●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영상재판의 범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재판부, 당사자, 대리인이 많음

- 법원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영상재판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함
  - 재판부 편의가 아니라 국민의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는 공감대 필요

▣ 재판부의 적극적 자세 필요

- 변호사들은 대체로 영상재판의 확대를 원하고 있음
- 변호사 입장에서는 재판부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으므로,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영상재판 의지를 밝혀줄 필요가 있음
  - 재판부가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먼저 영상재판 희망의 의사를 표현하기는 쉽지 않음
-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당사자, 대리인에게 홍보해주었으면 함
  - 영상재판에 친한 일정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시범재판부 지정

- 시범재판부를 지정하여 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하면서 제도 미비점 보완

▣ 당사자의 신청권 부여

- 당사자는 영상재판을 희망하는데 재판부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을 때 활용
- 신청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영상재판 의사 확인을 위한 안내서면 발송 필요

▣ 프로그램 편의성 개선 및 장비 확충

- 영상재판 관련 프로그램의 개선은 영상재판 준비에 필요한 업무를 경감하고, 재판부 및 영상재판 참여자가 영상재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임

●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 및 장비에 대한 우려가 많음을 알 수 있으므로,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프로그램 편의성 및 장비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증인, 감정인 영상신문 법제화에 따라 전국 민사법정에 영상 증인신문 장비 설치를 완료하였고, 해당 장비의 설정을 일부 조정하여 영상 변론 준비기일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함

- 그러나 아직도 영상재판을 실시하기 위해 장비 설치, 프로그램 설정 및 테스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처음에 접속이 잘 되지 않거나 접속 도중에 끊기는 현상이 발생할 때도 있음

- 특히 영상재판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주요 화상회의 프로그램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프로그램을 재판진행에 특화시켜 영상재판을 시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영상재판을 위해서는 단순히 장비와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석법원의 장소 및 가용시간을 확인하는 등 추가 노력이 들어감

- 영상재판 준비를 위한 재판부 및 당사자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지 못하면 영상재판 활성화는 요원할 것임

2. 법령 개정을 통한 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

가.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영상재판 활용방안

1) 개요

● 앞서 본 바와 같이 1996. 2.경 원격영상재판시스템이 개통되었으나, 운영비 부족, 낮은 이용률 등을 주된 이유로 하여 2001. 4.경까지 시스템 이용이 순차적으로 중단되었음

● 2001. 4.경 원격영상재판시스템 이용이 중단된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시스템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격

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를 다시 살려 운용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조성됨

-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원격영상재판**'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으로 정의하고 있음(위 특례법 제2조 제2호) → 이러한 원격영상재판은 영상재판 참여자가 거주지 근처에 있는 **법원 관리 중계시설로 출석**하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진행되는 영상재판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임

-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규칙'(7~8면 참조)의 개정 내용에 따라서는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이 **시·군법원의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사건, 즉결심판사건 등**에서의 영상재판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음 → 영상재판이 가능한 사건 유형을 확대하는 효과

2) 설문조사 결과

현재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시행 중이나 대법원규칙인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이하 '규칙')상 영상재판(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준하는 방식) 가능 법원이 제한되어 있어 제대로 된 활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규칙을 개정하여 영상재판을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①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되었으므로, 조속히 규칙을 개정하여 전국 법원에서 특례법에 따라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규칙을 개정하여 전국 법원에서 특례법에 따라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남용방지를 위해 증인의 거주지와 수소법원까지의 거리나 출석을 위한 소요시간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함

③ 규칙을 개정하되, 전국 법원이 아니라 영상재판이 적합한 일부 법원을 선정하여 규칙에 명시함이 적절함

④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재판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실질적 효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례법을 그대로 둔 채 규칙만 개정할 실익이 없음

⑤ 현재보다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규칙을 개정하여서는 아니 됨

⑥ 기타(　　)

● 법관

구분	명수	백분율(%)
①	183	28.8
②	313	49.3
③	45	7.1
④	46	7.2
⑤	23	3.6
⑥	9	1.5
무응답	16	2.5
합계	63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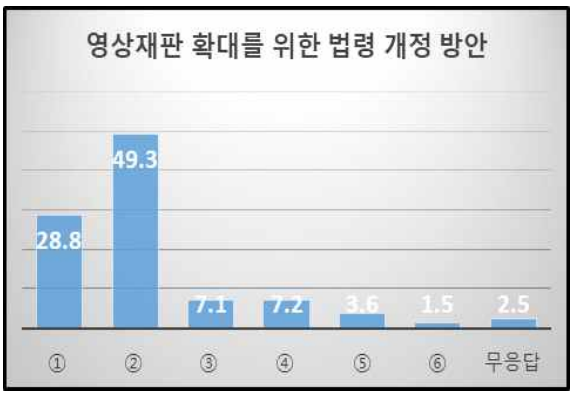

● 법원공무원

구분	명수	백분율(%)
①	260	18.9
②	637	46.2
③	199	14.4
④	65	4.7
⑤	113	8.2
⑥	15	1.1
무응답	90	6.5
합계	1,37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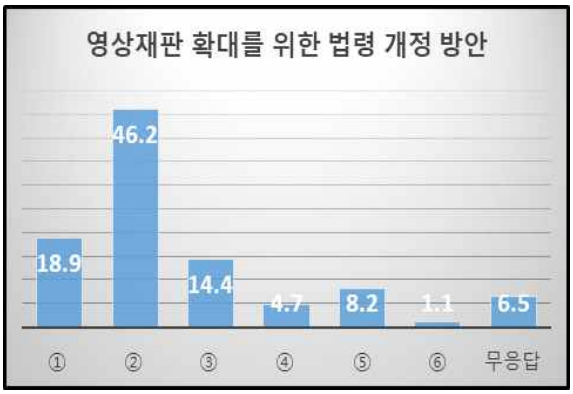

● 변호사

구분	명수	백분율(%)
①	576	50.3
②	274	24.0
③	79	6.9
④	119	10.4
⑤	85	7.4
⑥	11	1.0
무응답	0	0.0
합계	1,144	100.0

3) 분과위원회 주요 논의내용

▣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대법원규칙의 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나. 민사사건 변론준비기일 영상재판 요건 완화

1) 개요

▣ 개정 규칙에 따른 영상 변론준비기일 요건 : ① + ②

- ①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 ② 모든 당사자의 동의

▣ 출석 곤란 요건 완화 요청

- 원격지의 문제, 즉, 물리적 거리 그 자체는 원격영상재판을 인정하게 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
- 동일 또는 인접한 시, 군에 있더라도 법정까지 도착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영상재판의 편익이 인정됨

▣ 동의 요건 완화 요청

- 현행 민사소송법상 증인, 감정인에 대한 영상신문 결정 시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과의 균형상 영상 변론준비기일 실시 여부 결정에도 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면 충분하다는 의견
- 사전 동의 대신 당사자로 하여금 사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의견

2) 설문조사 결과

현행 민사소송규칙상 변론준비기일의 영상재판 요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모든 당사자의 동의)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① 현행 변론준비기일의 영상재판 요건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없음

② ⒶⒷ 모두 불필요 -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론기일에 비해 변론준비기일은 영상재판을 실시하더라도 부작용의 우려가 미미하므로, 요건에 별다른 제한을 둘 이유가 없음

③ Ⓐ 불필요, Ⓑ 일부 수정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화상회의의 대중화를 고려할 때 사전에 모든 당사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함은 원활한 절차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대신 사후적으로 영상재판을 희망하지 않는 당사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함

④ Ⓐ 불필요, Ⓑ 일부 필요 - 당사자 중 영상재판 방식으로 참석하는 당사자의 동의만 받으면 충분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나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라는 요건은 필요 없음

⑤ Ⓐ 불필요, Ⓑ 필요 - 영상 변론준비기일로 당사자의 이동시간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라는 요건은 필요 없으나, 일방의 영상재판 참석이더라도 법정에 출석한 상대방 당사자의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모든 당사자의 동의라는 요건은 유지하여야 함
⑥ 기타(　　)

● 법관

구분	명수	백분율(%)
①	134	29.6
②	63	13.9
③	48	10.6
④	58	12.8
⑤	125	27.7
⑥	8	1.8
무응답	16	3.6
합계	452	100.0

● 법원공무원

구분	명수	백분율(%)
①	374	33.4
②	120	10.7
③	156	13.9
④	101	9.0
⑤	222	19.8
⑥	20	1.8
무응답	126	11.4
합계	1,1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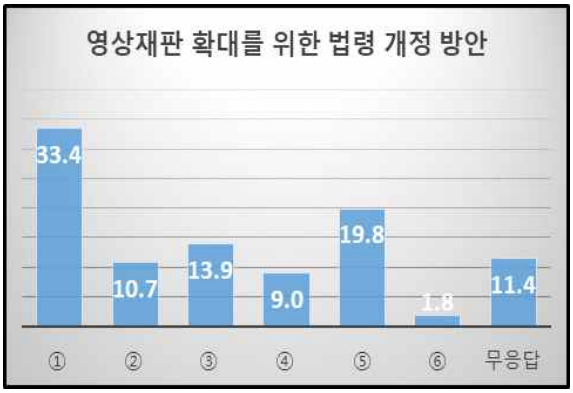

● 변호사

구분	명수	백분율(%)
①	312	27.3
②	264	23.1
③	150	13.1
④	160	14.0
⑤	248	21.7
⑥	10	0.8
무응답	0	0.0
합계	1,144	100.0

3) 분과위원회 주요 논의내용

▣ **영상 변론준비기일 요건을 완화하는 데 대체로 동의**

- 영상재판의 경우 꼭 상대방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
  - 희망하는 사람은 영상재판을 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법정 출석을 하면 충분
- 당사자에게 의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거나 송달이 되었더라도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함
  - 소액사건 공시송달 사건 등
  - 일방당사자가 출석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불출석을 희망하는 사건
-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영상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수 있게 함이 적절

다. 민사 변론기일 영상재판 도입 여부

1) 개요

▣ **영상재판 도입 필요성**

- 법원도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사회흐름에 맞춰 각종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함
- 영상재판을 통해서도 기술적으로 법정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변론이 가능하다면 변론기일이라고 하여 변론준비기일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음
  - 정보통신기술 측면에서 영상 변론기일은 영상 변론준비기일과 특별히 다를 바 없음
  - 이미 다수 사건에 관하여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었고 특별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영상재판 확대에 기술적 문제도 없음

▣ **저해 요소**

- 변론준비기일만 영상재판으로 실시하는 경우 이후 변론기일은 법정에서 진행

되므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비교적 크지 않은 반면, 변론기일까지 영상재판으로 실시하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당사자가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신원확인이나 변론 분위기 등에서 부작용 우려가 있을 수 있음

2) 설문조사 결과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민사 변론준비기일뿐만 아니라 변론기일도 영상재판 방식으로 열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①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기일을 진행하더라도 법정 진행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한 사건에서 변론기일에도 영상재판(인터넷 화상장치 포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② 변론기일에 영상재판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동감하나, 신원확인, 보안이나 업무효율 측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부 사건유형(예를 들어 특허사건)에 제한적으로 도입(인터넷 화상장치 포함)한 후 경과를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함이 바람직함

③ 변론기일에도 영상재판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동감하나,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특히 신원확인, 보안 측면에서의 위험이 적지 않으므로, 변론종결만은 양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④ 변론기일에도 영상재판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동감하나, 개인 사무실이나 자택에서의 영상재판은 신원확인, 보안 측면에서의 위험이 적지 않으므로, 인터넷 화상장치는 제외하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재판을 우선 도입함이 적절함

⑤ 변론기일까지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없음

⑥ 기타(　　)

● 법관

구분	명수	백분율(%)
①	102	22.6
②	135	29.9
③	52	11.5
④	75	16.6
⑤	73	16.1
⑥	3	0.6
무응답	12	2.7
합계	4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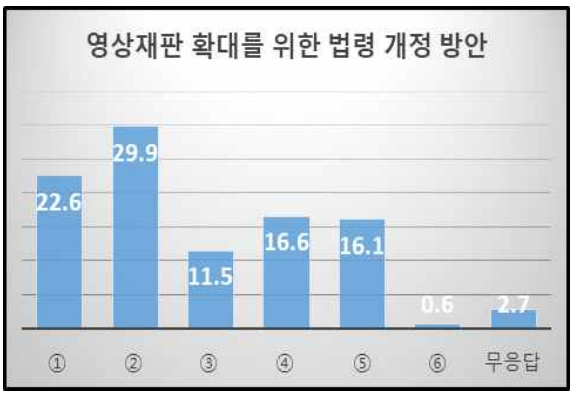

● 법원공무원

구분	명수	백분율(%)
①	185	16.5
②	337	30.1
③	105	9.4
④	144	12.9
⑤	243	21.7
⑥	5	0.4
무응답	100	9.0
합계	1,1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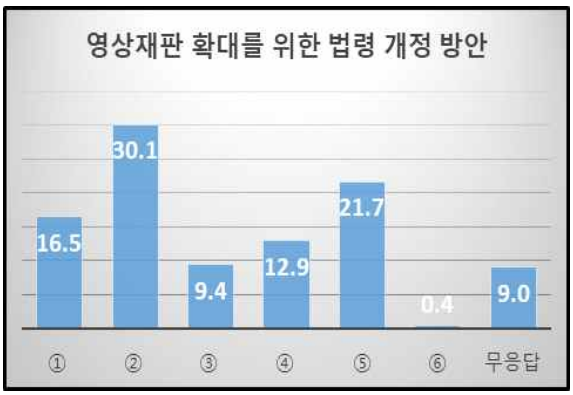

● 변호사

구분	명수	백분율(%)
①	460	40.2
②	290	25.3
③	100	8.7
④	115	10.1
⑤	162	14.2
⑥	17	1.5
무응답	0	0.0
합계	1,144	100.0

3) 분과위원회 주요 논의내용

▣ **법률을 개정하여 변론기일에 영상재판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 일치**

● 영상재판으로 인한 편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실무상 예외적인 사건에서만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서 열리는 변론기일에 영상재판을 도입할 필요성이 매우 큼

- 어떤 재판은 대기시간 없이 바로 시작하지만 어떤 재판의 경우는 3시간까지도 기다려본 적이 있는데 영상재판으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없앨 수 있음

- 간단히 서면진술만 하고 종결하는 변론기일의 경우 법정출석보다 영상재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실무상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의 진행 방식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굳이 준비기일만으로 영상재판을 한정할 이유가 없음

▣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점진적·단계적 추진이 적절하다는 점에 대하여 대체적인 공감대 형성**

- 신원확인 문제, 소송대리권 잠탈 등 부작용 최소화 필요성
- 재판을 촬영하여 유출하는 것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 이러한 측면에서는 인터넷 화상장치보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영상재판을 확대함이 부작용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음

▣ **기타 의견**

-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의 허용 요건을 동일하게 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영상재판을 희망하는 당사자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
- 영상재판에 동의하더라도 마지막 기일까지 계속 영상재판으로 진행하도록 의무화함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당사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판사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일별로 다르게 진행할 수 있음
- 영상재판 중에라도 제3자의 개입 우려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
- 특정 유형의 사건에서는 영상재판을 원칙적인 기일 진행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의견

라. 영상 증인신문 범위 확대

1) 개요

▣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의 제한**

- 현행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상 증인신문이 허용되는 사건이더라도, 영상신문의 방식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인터넷 화상장치'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증인은 자신의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가까운 법원에 있는 영상신문실로 출석해야 함
  - 감정인은 인터넷 화상장치로 감정인신문기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됨
-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증인도 감정인처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음

▣ 형사사건 영상 증인신문 활용 필요성 및 저해 요소

- 당사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민사사건 증인보다, 객관적인 목격자인 경우가 많은 형사사건 증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입 필요성이 큼
  - 법정 출석에 대하여 거부감을 나타내는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강제구인을 하기도 어려운 사안이 종종 있음
- 한편, 많은 법관은 공판정에 출석한 증인이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하는 증언 과정에서 증인의 표정이나 몸짓, 증언 태도 등을 가까이에서 세밀하게 살펴보고 증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함
  - 이는 민사소송도 마찬가지나, 유무죄 및 양형을 정하는 형사소송이 상대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의 필요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음
- 조서 진정성립 등의 어려움
  -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에 대한 영상재판을 대폭 확대하는 경우 종이기록을 사본하여 사전에 원격지 법원에 송부해야 하는 등의 절차상 어려움이 예상됨

2) 설문조사 결과

▣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관련

현행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상 영상재판에 의한 증인신문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주로 법원 내 중계시설에서 진행)을 통한 방식만 가능한데, 이와 더불어 인터넷 화상장치(주로 개인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진행)를 이용한 신문 방식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①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더라도 법정 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경우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한 경우 증인이 자유롭게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② 증인신문에서는 증인의 신원 확인 및 자유로운 증언 환경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개인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증언을 하는 경우 신원확인, 보안, 주변환경(사각에서 증언을 유도하는 행위) 측면에서의 위험이 적지 않으므로, 인터넷 화상장치는 제외하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방식만 허용함이 적절함

③ 증인의 신원 확인 및 자유로운 증언 환경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하나, 증인이 근처 중계시설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영상을 통한 신원확인 등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인터넷 화상장치의 이용도 허용할 필요가 있음

④ 사건유형의 특성에 비추어 당사자주의에 기초한 민사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반면, 실체적 진실발견이 더 강조되는 형사 증인신문에서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방식만 허용함이 적절함

⑤ 기타(　　)

● 법관

구분	명수	백분율(%)
①	69	15.3
②	211	46.7
③	121	26.8
④	37	8.2
⑤	5	1.1
무응답	9	1.9
합계	4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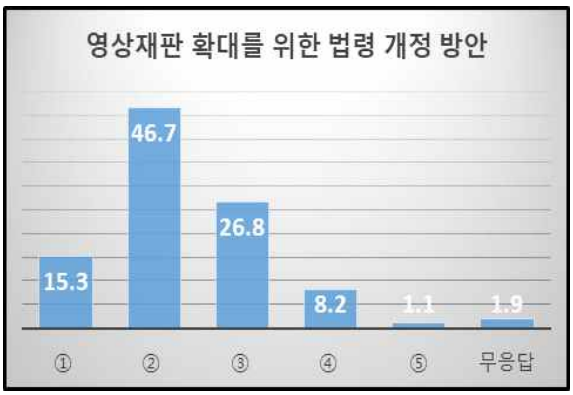

● 법원공무원

구분	명수	백분율(%)
①	209	18.7
②	407	36.4
③	228	20.4
④	175	15.6
⑤	9	0.8
무응답	91	8.1
합계	1,1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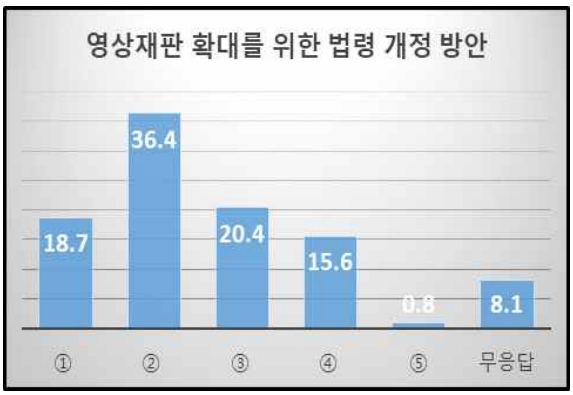

● 변호사

구분	명수	백분율(%)
①	284	24.8
②	480	42.0
③	203	17.7
④	143	12.5
⑤	34	3.0
무응답	0	0.0
합계	1,14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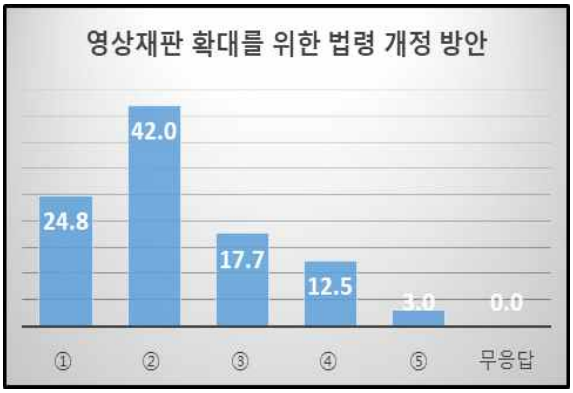

▣ 형사사건 영상 증인신문 확대 관련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사재판의 증인 등에 대한 영상재판 사유(아동학대.성폭력 피해자 및 심리적 부담으로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려운 증인)가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민사재판과 유사한 수준(교통 불편 등)으로 영상재판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① 민사 사건보다 형사 사건에서 증인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조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형사 사건에서 교통 불편 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증언의 신빙성 유무 판단을 위해 가능하면 법정에서 직접 증언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교통 불편 등의 사유를 증인에 대한 영상재판 사유로 추가하더라도, 증인의 거주지와 수소법원까지의 거리나 출석을 위한 소요시간 등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해야 함

③ 향후 형사 증인신문에 대한 영상재판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아직 형사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서 진정성립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증인에 대한 영상재판 사유를 확대함은 시기상조임

④ 형사재판에서 증언의 중요성에 비추어 단순한 교통 불편은 영상재판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없음

⑤ 기타(　　)

● 법관

구분	명수	백분율(%)
①	88	19.5
②	114	25.2
③	141	31.2
④	88	19.5
⑤	3	0.7
무응답	18	3.9
합계	4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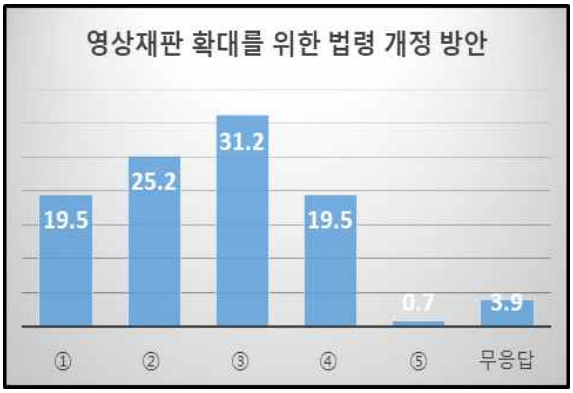

● 법원공무원

구분	명수	백분율(%)
①	242	21.6
②	302	27.0
③	289	25.8
④	158	14.1
⑤	7	0.6
무응답	121	10.8
합계	1,1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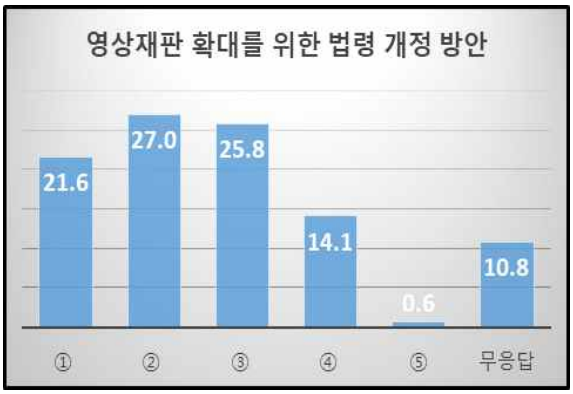

● 변호사

구분	명수	백분율(%)
①	298	26.0
②	261	22.8
③	352	30.8
④	223	19.5
⑤	10	0.9
무응답	0	0.0
합계	1,14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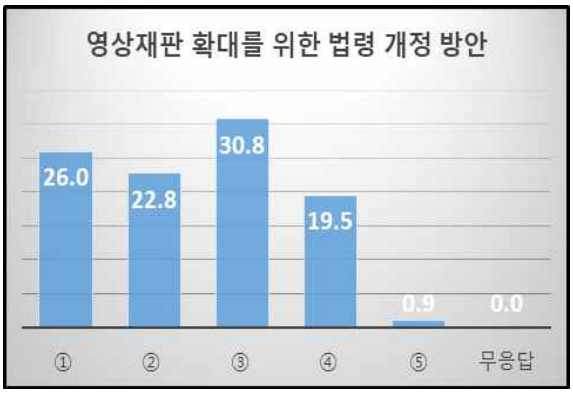

3) 분과위원회 주요 논의내용

▣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 증언의 신빙성 유무 판단을 위해 가능하면 법정에서 직접 증언을 듣는 것이 바람직

-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을 허용하는 경우 증인이 있는 장소에 누군가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유도하거나 증언내용을 안내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음
- 영상 증인신문에 대하여, 법관과 변호사 모두 법정에서 증인을 직접 대면하여 오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생생한 정보를 영상재판으로는 얻을 수 없음에 따라 실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반면, 주위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 진행을 위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형사사건에서 영상재판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면서도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음**

- 특히 실체적 진실발견 측면에서 일반적인 절차로 신문하기 어려운 해외 거주 증인 등에 대하여 영상재판 방식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큼
  - 해외 거주 증인에 대하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이 어렵다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방식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
  - 병원에 입원해있는 환자에 대하여도 영상재판을 활용한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
- 모니터를 통해 한줄한줄 조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는 데 실무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

마. 형사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 영상재판 도입 여부

1) 개요

▣ **영상재판 도입 필요성**

- 구두 변론의 방식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사이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영상재판 도입 범위에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특별히 구별할 이유가 없음
-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구치소, 교도소에서 법원으로 수감자 호송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몇 차례 있었음
  - 구속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호송 불가로 인한 공판기일 변경, 연기는 충실한 심리를 어렵게 함
  - 이에 따라 호송이 어려울 때는 영상재판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공판기일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은 법정에서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건에 따라서는 영상재판이 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요청

▣ **저해 요소**

-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어 기소된 피고인이 민사분쟁의 당사자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민사사건보다 엄격한 신분 확인의 필요성 존재
  - 한쪽 당사자인 검사가 출석한다는 점에서 항상 일방 당사자 영상재판이 되는 난점
  - 구공판 피고인은 공판 또는 선고 시 항상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정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있음
  - 구약식 피고인이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 소송대리인만 출석해도 되는 민사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
- 형사소송이 아직 종이기록에 기반하여 있는 상황에서 전자소송 도입보다 먼

저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문서에 먼저 정보통신기술이 도입된 후 영상의 정보통신화가 이루어지는 추세

- 민사소송도 전자소송이 정착된 후 영상재판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2) 설문조사 결과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형사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에 대하여 영상재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수선택 가능)

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영상재판의 확대 필요성은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이 다를 바 없으므로, 형사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에 대하여도 영상재판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② 구공판 피고인은 법정구속 가능성 등 절차의 성격상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반면, 정식재판청구 피고인에 대하여는 영상재판 도입도 검토할 수 있음

③ 구공판,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불문하고 피고인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반면, 피고인 출석 없이 변호인만 참석하는 공판준비기일에 대하여는 영상재판 도입도 검토할 수 있음

④ 앞서 본 공판준비기일에 더하여, 피고인 등 수감자의 호송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구치소・교도소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의 영상재판은 허용할 필요가 있음

⑤ 향후 형사 사건에서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아직 형사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까지 영상재판을 도입하기는 시기상조임

⑥ 피고인을 민사분쟁의 당사자와 동일선상에서 대우하기는 어려우므로,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에 영상재판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⑦ 기타(　　)

● 법관

구분	명수	응답비율 (%)	백분율 (%)
①	82	18.1	13.6
②	48	10.6	8.0
③	162	35.8	27.0
④	128	28.3	21.3
⑤	88	19.5	14.6
⑥	68	15.0	11.3
⑦	9	2.0	1.5
무응답	16	3.5	2.7
합계	601	132.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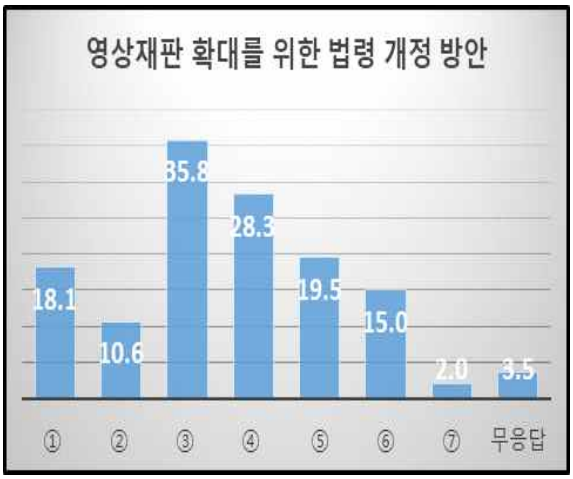

● 법원공무원

구분	명수	응답비율 (%)	백분율 (%)
①	208	18.6	14.7
②	128	11.4	9.0
③	217	19.4	15.3
④	240	21.4	16.9
⑤	286	25.6	20.2
⑥	214	19.1	15.1
⑦	11	1.0	0.8
무응답	112	10.0	7.9
합계	1,416	12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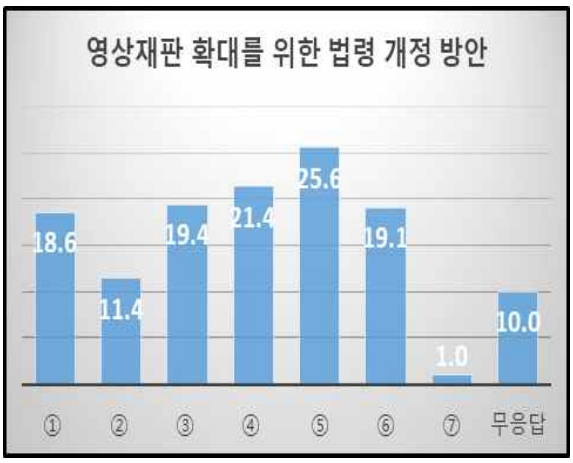

● 변호사

구분	명수	응답비율 (%)	백분율 (%)
①	318	27.8	21.9
②	153	13.5	10.5
③	291	25.5	20.1
④	212	18.5	14.6
⑤	251	21.9	17.3
⑥	218	19.2	15.0
⑦	4	0.3	0.3
무응답	4	0.3	0.3
합계	1,451	12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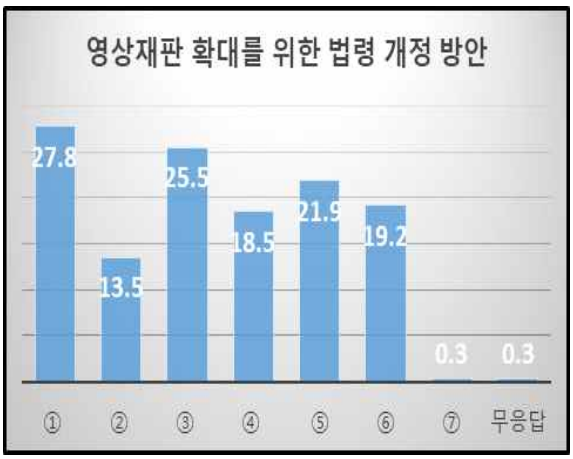

3) 분과위원회 주요 논의내용

▣ **형사 공판기일 및 공판준비기일에 일반적으로 영상재판을 도입함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함**

● 형사재판의 경우 특정한 상황에서의 영상재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법관 대면권의 의미 및 전자소송 미도입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

●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전자소송이 먼저 제도적으로 안정화된 다음에 영상재판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 **다만, 특정 유형의 사건이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적지 않은 위원들이 동의하였음**

- 언젠가 어디선가 누군가한테 필요할 때 근거가 없어서 시행하지 못하는 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률에서는 최대한 포괄적으로 허용 근거규정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피고인의 법관 대면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건
  - 공판준비기일 중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사건
- 경미한 사건을 유형화하여 영상재판 허용하는 방안
  - 피해자가 있는 사건, 없는 사건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는 의견
- 세부요건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수 있다면, 법률에는 허용의 근거 조문 중심으로 규정하고, 사건유형별 또는 상황별 요건은 대법원규칙에서 기술적 수준, 실시 현황 등을 종합하여 탄력적으로 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바. 형사사건 심문기일 영상재판 도입 여부

1) 개요

▣ **영상재판 도입 필요성**

- 교도소 · 구치소의 <u>불필요한 호송 업무 감축</u> 필요성
  - 피고인 1명의 소환을 위해 교도관 3~4명이 따라오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있음
- 가령 영장발부 법원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형집행으로 구금된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사안의 내용상은 굳이 심문기일을 지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단순히 범죄사실 요지, 구속 이유 등에 대한 고지를 위해 기일을 지정하는 사례가 종종 있음

▣ **저해 요소**

●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형사사건의 종류는 다양하나, 주로 문제가 되는 유형인 영장실질심사, 보석청구 등의 사건은 인신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형사 본안사건에 준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2) 설문조사 결과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형사 심문기일(영장실질심사, 보석청구, 상소권회복청구 등)에 대하여 영상재판(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영상재판의 확대 필요성은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이 다를 바 없고, 수감 중인 구치소나 근처 법원에 있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활용하여 수감자 이송에 따른 행정소요를 대폭 줄이고, 변호인 조력을 충실화할 수 있으므로, 형사 심문기일에 대하여 영상재판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동의와 무관)

② 법관 대면권의 의의를 고려할 때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영상재판을 받도록 함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근처 법원에 있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까지 이동하게 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동의와 무관)

③ 수감자를 수감 장소에서 수소법원까지 이동시키기 위한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져 실질적으로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 심문기일에 영상재판을 허용함이 적절함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동의와 무관)

④ 피고인.피의자의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만 영상재판을 허용함이 적절함

⑤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법관이 피고인.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술을 청취함이 필수적이므로, 형사 심문기일에 영상재판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⑥ 기타(　　)

● 법관

구분	명수	백분율(%)
①	94	20.8
②	46	10.2
③	58	12.8
④	73	16.2
⑤	153	33.8
⑥	10	2.2
무응답	18	4.0
합계	4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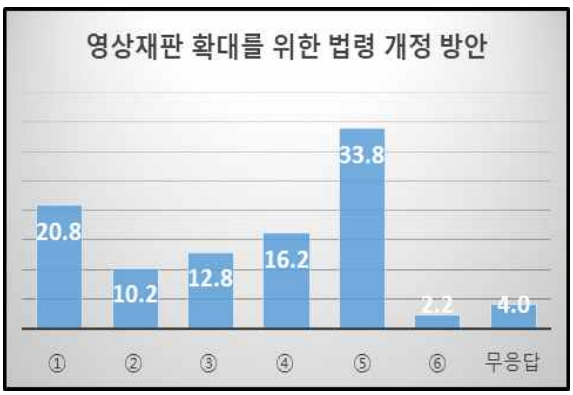

● 법원공무원

구분	명수	백분율(%)
①	270	24.1
②	137	12.2
③	167	14.9
④	122	10.9
⑤	305	27.3
⑥	10	0.9
무응답	108	9.7
합계	1,1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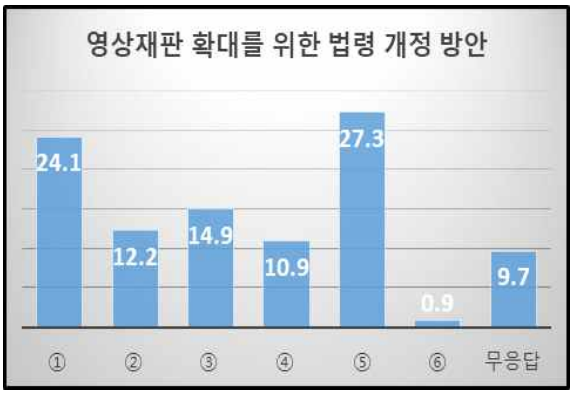

● 변호사

구분	명수	백분율(%)
①	332	29.0
②	116	10.2
③	93	8.1
④	190	16.6
⑤	403	35.2
⑥	10	0.9
무응답	0	0.0
합계	1,14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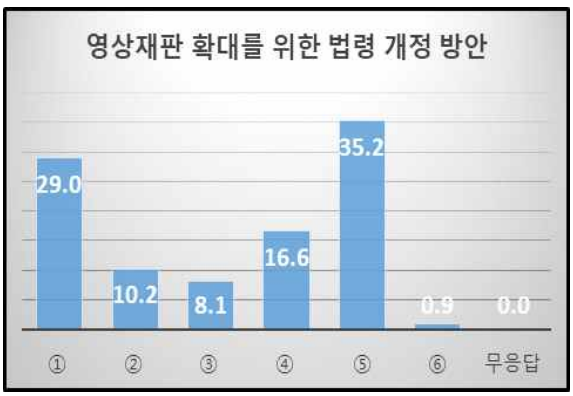

3) 분과위원회 주요 논의내용

▣ **법관이 피고인·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절차의 중요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심문절차에 영상재판을 도입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 영장실질심문이 도입된 이유가 피의자들과 대면하여 피의자들이 억울한 면이 없는지 얘기를 들어주는 측면이 강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만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 **반면, 특정 유형이나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에는 영상재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음**

● 상소권회복청구사건, 구속적부심, 보석절차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

- 가령 불출석 상태로 판결이 선고된 후 불시에 구속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석방되기를 희망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건에서 호송 등 문제로 심문기일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

-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1~2시간 전에 기일 통지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이 시간이 촉박한 경우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이 이루어지는 데 영상재판의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는 의견
-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정 출석은 거부하면서도 구치소 내 시설을 이용한 영상재판은 거부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

V. 종합

1. 현 제도의 한계 및 법률 개정 필요성

▣ **현행 제도에서도 홍보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나 이것만으로는 영상재판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민사소송에서 변론까지 영상재판을 확대하고, 형사재판에서 일정한 범위의 재판까지 영상재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불가피함**

2. 입법 방안

▣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거나 규칙을 정비하는 방안**

- 과거의 실패한 법률이라는 인식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모든 상황에 대처하여 재판기능을 영속적으로 확보함에 한계가 있음

▣ **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 (★)**

- 개정 과정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여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등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이미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별첨)이 발의되어 있어 이에 대한 법원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입법의 촉진을 도모할 수 있음